

인도(India)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및 현행법 : 1952년(근로자적립기금), 1972년(퇴직금제도), 1976년(근로자예금연계 보험제도), 1995년(근로자연금제도), 1995년(국민사회부조제도), 2008년(비조직근로자 사회 보장제도), 2013년(연금기금규제 및 개발기관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, 적립기금, 사용자배상책임보험, 사회부조제도
 - ※ 적립기금제도 기존 가입자가 아닌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는 Pradhan Mantri Rojgar Protsahan Yojana(PMRPY)제도에 참여할 수 있음. 이 제도 하에, 정부는 수급자격이 있는 각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및 적립기금 사용자 보험료를 최대 3년간 보조함
 - ※ 장제비는 질병 및 출산 제도 하에 지급됨

3 적용대상

- 사회보험(노령, 장애, 유족연금) : 1995년 11월 16일에 또는 그 이후에 적립기금에 가입한 근로자
 - 임의 가입 가능
 - 적용제외 : 자영자, 농업종사자, 50인 미만의 협동조합에 속한 자
 - 특별제도 : 특정 공공부문 근로자
- 사회보험(유족급여) 및 적립기금 : 186개의 적용업종에 속하고 근로자가 20인 이상인 사업장 (20인 미만이 되더라도 지속적용)의 월 소득 15,000 rupees 이하인 근로자(비정규, 파트타임, 일용직, 계약직 근로자 포함); 50인 이상의 협동조합을 포함한 법에 명시된 기타 직종 근로자
 - 임의적용 :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당연적용사업장의 근로자로 월 소득이 15,000 rupees 이상인 자; 사용자와 근로자중 과반수가 보험료 납부에 동의할 경우, 2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도 가능함
 - 동 제도에 상응하는 직역 사적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적용제외 가능
 - 적용제외 : 자영자, 농업노동자, 50인 미만의 협동조합에 속한 자
- 사용자배상책임보험 : 공장, 광산, 유전, 농장, 항구, 철도 근로자 및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
 - 적용제외 : 자영자, 농업노동자, 50인 미만의 협동조합에 속한 자. Jammu 및 Kashmir주는 해당 없음

- 특별제도 : 광산근로자, 철도근로자, 공공부문 근로자

○ 사회부조 : 빈곤 노인과 가난한 가구

- 특별제도 : 비공식부문 프로그램, 특정 장인과 지방의 토지 비소유자

4 재원조달

○ 가입자

- 사회보험 : 없음
- 적립기금 : 기본급의 12%(특정산업분야, 1997년 9월 22일 이전에 적용 시작된 20인 미만의 사업장 및 기타 특별한 경우에는 10%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상한액은 15,000 rupees임
- 사용자배상책임보험 : 없음
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자영자

- 사회보험 : 없음
- 적립기금 : 없음
- 사용자배상책임보험 : 없음
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사용자

- 사회보험 : 월 임금지급액의 8.33%; 58세 이상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없음(노령, 장애, 유족연금), 월 임금지급액의 0.5% 가산(유족급여)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상한액은 15,000 rupees임
- 적립기금 : 월 임금지급액의 3.67% + 관리비로 월 임금지급액의 0.5%; 58세 이상 근로자 월 임금지급액의 8.33%
- 사용자배상책임보험 : 월 임금지급액의 평균 4%
- 사회부조 : 없음

○ 정 부

- 사회보험 : 가입자 기본급의 1.16%(노령, 장애, 유족연금); 특정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사용자 보험료를 모든 급여에 대해 최대 3년까지 대신 납부해줌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소득 상한액은 15,000 rupees임
- 적립기금 : 없음
- 사용자배상책임보험 : 없음
- 사회부조 : 총비용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노령퇴직연금, 사회보험) :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진 58세 도달한 자
 - 근무가 종료되어야 함
 - 부분연금 : 10년 미만의 가입기간을 가진 58세 도달한 자
 - 조기연금 :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진 50세 도달한 자
 - 연기연금 : 60세까지 연금이 연기될 수 있음.
- 노령급여(적립기금) :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퇴직한 58세 도달한 자; 영구출국,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해고된 경우, 자발적 퇴직제도 하의 근무의 종료,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비적용 대상 사업장으로 고용관계 변동, 또는 특정 다른 상황 하에서는 연령 무관 수급 가능
 - 조기인출 : 생명보험 구입, 주택구입이나 건축, 대출금 상환, 자녀 교육 및 결혼, 중대한 질병 치료,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, 장애발생 관련 지출 등 특정목적을 위해 퇴직 이전 일부 금액 인출 가능. 특정 조건 하에, 58세 이전 계좌 잔고전액 인출 가능
- 노령급여(퇴직금, 사용자배상책임보험) : 최소 5년 이상의 지속된 근로가 있어야 함
- 노령연금(Indira Gandhi 국민노령연금제도, 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60세
 - 소득조사 : 연소득이 특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, 이는 주마다 상이할 수 있음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장애연금, 사회보험) : 완전한 근로능력 불능으로 판단되어야 하며, 최소 1달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어야 함
- 장애급여(적립기금) : 영구적이고 완전한 통상적 근로능력 상실로 판단되어야 함
- 장애급여(퇴직금, 사용자배상책임보험) : 질병이나 사고에 의한 장애로 발생한 통상적 직업에 대한 근로 불능으로 판단되어야 함
- 장애연금(Indira Gandhi 국민장애연금제도, 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18세 이상이며 최소 80%의 장애 등급으로 판단되어야 함
 - 소득조사 : 연소득이 특정제한을 넘지 않아야 함, 이는 주마다 상이할 수 있음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 : 사망자의 사망 시 근로 중 또는 퇴직의 상태에 관계없이, 사망자가 최소 1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이 있는 경우 지급
 - 수급자격이 있는 유족들은 미망인(홀아비), 25세 미만인 두 자녀(영구완전장애자일 시 연령제한 없음)를 포함함. 미망인(홀아비) 또는 수급자격이 있는 고아가 없다면, 연금은 지정 유족이나 피부양 부모에게 지급됨
 - 미망인(홀아비)연금은 (재)혼인 시 중지됨
- 유족급여(근로자예금연계보험제도, 사회보험) : 기금 가입자가 적립기금계좌 잔액 전체 인출 전 사망 시, 지정 수혜자, 특정 가족 구성원, 또는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됨

- 유족급여(적립기금) : 기금 가입자 적립기금계좌 잔액 전체 인출 전 사망 시, 지정 수혜자, 특정 가족 구성원, 또는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됨
- 유족급여(퇴직금, 사용자배상책임보험) : 근로자가 질병 또는 사고로 사망 시,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 또는 지정 유족에게 지급됨
- 미망인연금(Indira Gandhi 국민미망인연금제도, 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40세 이상의 미망인에게 지급됨
 - 소득조사 : 연소득이 특정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, 이는 주마다 상이할 수 있음
- 유족수당(사회부조) : 18~64세인 주 생계부양자의 사망 시, 빈곤 가정(국가가족급여제도)에게 지급됨

6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급여

- 노령연금(노령퇴직연금, 사회보험) : 가입자의 적용대상 근로 및 임금에 근거하여 월 연금액이 지급됨
 - 월 최저노령연금액은 1,000 rupees임
 - 부분연금 : <근로자와 사용자 보험료 납입총액 + 경과이자 - 이전 인출액>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
 - 조기연금 : 일반퇴직연령 이전 조기수령 1년마다 4%씩 감액
 - 연기연금 : 1년 연기할 때마다 4%씩 증액 (2년 연기 시 8.16%)
 - 급여조정 : 연금재정평가에 근거하여 중앙 정부에 의해 매년 급여 조정됨
- 노령급여(적립기금) : <근로자와 사용자 보험료납입총액 + 경과이자 - 이전 인출액>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
 - 조기연금 : <근로자와 사용자 보험료 납입총액 + 경과이자> 금액이 인출 가능함. 인출 종류, 기금 가입자의 계좌 잔고, 보험료 납부기간과 같은 조건들에 의해 특정 제한이 가해질 수 있음. 구매가 목적인 경우 최대 인출 가능금액은 임금 36개월 치의 금액임
- 노령급여(퇴직금, 사용자배상책임보험) : 근로자의 최종임금에 기초하여, 연속 근무기간 1년당 15일분 임금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(6개월을 초과하는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감액지급). 계절적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한 매 계절 당 7일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
 - 최대 근로자 책임 노령급여는 400,000 rupees임
- 노령연금(Indira Gandhi 국민노령연금제도, 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60~79세인 자에게 월 200 rupees; 80세 이상인 자에게 월 500 rupees의 기본연금이 지급됨. 추가적인 금액이 지급될 수 있으며 주마다 상이할 수 있음

○ 장애급여

- 장애연금(장애연금, 사회보험) :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대상 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한 월 연금액이 지급됨; 특정 조건 하에 연금액이 <근로자와 사용자 보험료 납입총액 + 경과이자>의 일시금으로 지급될 수 있음
 - 급여액 산정을 위한 월 최저임금은 250 rupees임

- 월 최저 장애연금액은 1,000 rupees임
- 급여조정 : 연금재정평가에 근거하여 중앙 정부에 의해 매년 급여 조정됨
- 장애급여(적립기금) : <근로자와 사용자 보험료 납입총액 + 경과이자 - 이전 인출액>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
- 장애급여(퇴직금, 사용자배상책임보험) : 근로자의 최종임금에 기초하여, 장애 발생 전 연속 근무기간 1년당 15일분 임금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(6개월을 초과하는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감액지급). 계절적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한 매 계절 당 7일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
- 최고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장애급여는 350,000 rupees임
- 장애연금(Indira Gandhi 국민장애연금제도, 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월 300 rupees의 기본 연금이 지급됨. 추가적인 금액이 지급될 수 있으며 주마다 상이할 수 있음

○ 유족급여

- 유족연금(사회보험)
 - 배우자연금(미망인연금) : 사망자가 받았거나 받을 의무가 있는 사회보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50%이 지급됨
 - 최저 월 배우자연금액은 450 rupees임
 - 고아연금(자녀연금) : 배우자연금의 25%; 완전한 고아에게는 75%가 지급됨
 - 최저 월 고아연금액은 150 rupees임(완전한 고아에게는 250 rupees임)
 - 다른 수급권이 있는 유족 연금 : 사망자가 받았거나 받을 자격이 있는 사회보험 노령 또는 장애연금의 최대 75%까지 지급됨
 - 급여조정 : 연금재정평가에 근거하여 중앙 정부에 의해 매년 급여 조정됨
- 유족급여(근로자예금연계보험제도, 사회보험) : 사망 전 12개월간의 사망자 적립기금계좌의 평균 계좌 잔액 또는 가입 전체 기간 평균계좌 잔액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급됨
 - 최대 사회보험 유족급여액은 600,000 rupees임
 - 사회보험 유족급여는 적립기금 유족급여에 더불어 추가적으로 지급됨
- 유족급여(적립기금) : 근로자와 사용자 보험료 납입총액 + 경과이자 - 이전 인출액>에 해당하는 일시금이 지정 유족에게 지급되거나 수급자격이 있는 가족 구성원 사이에 동등하게 나눠짐
- 유족급여(퇴직금, 사용자배상책임보험) : 근로자의 최종임금에 기초하여, 장애 발생 전 연속 근무기간 1년당 15일분 임금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(6개월을 초과하는 1년 미만 부분에 대하여는 감액지급). 계절적 근로자 사망 시, 근로한 매 계절 당 7일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사용자가 지급
 - 최대 사용자배상책임보험 유족급여액은 350,000 rupees임
- 미망인연금(Indira Gandhi 국민미망인연금제도, 사회부조, 소득조사) : 월 300 rupees 지급됨
- 유족수당(사회부조) : 20,000 rupees의 일시금이 지급됨

- 노동고용부(Ministry of Labor and Employment)
 - <https://labour.gov.in>
 - 거의 모든 제도에 대한 전반적 감독

- 근로자적립기금(Employees' Provident Fund Organisation)
 - https://www.epfindia.gov.in/site_en/index.php
 - 지역 및 지방사무소, 감독사무소, 회계관리사무소를 통한 사회보험 및 적립기금제도 조직 및 운영

- 근로자 적립기금 중앙 수탁위원회(Central Board of Trustees of the Employees' Provident Fund)
 - 노.사.정 위원회를 통해 적립기금제도 운영

- 중앙 및 주 당국(central and state authorities)
 - 사용자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

- 지방개발부(Ministry of Rural Development)
 - <https://rural.nic.in>
 - 사회부조제도 감독

- 국가사회부조제도(National Social Assistance Programme)
 - 사회부조제도 관리

<2018년 ISSA 자료>